

<p>제2021-65호 2021년 4월 7일(수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○ 여수시 고시	제2021-150호	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(웅천초등학교)	3
○ 여수시 고시	제2021-152호	공유수면(구거) 점·사용 허가(변경) 고시	6
○ 여수시 고시	제2021-153호	공유수면(구거) 점·사용 허가(변경) 고시	7
○ 여수시 고시	제2021-154호	2021년 여수시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고시	8

공 고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을 위한 행정예고

여수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(확대)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,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1. 4. 7.

여 수 시 장

1. 목적

여수시 관내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에 따른 의견수렴

2. 고시방법 : 여수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osu.go.kr>)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

3. 행정예고(고시) 기간 : 2021. 4. 7. ~ 2021. 4. 27. (20일간)

4. 지정위치 : 붙임1 참조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고시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,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61-659-5837)

라. 보내실 곳 :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(☎061-659-4143)

바.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【 붙임 2 】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공유수면(구저) 점·사용 허가(변경)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: 제2021-16호
2. 허가일자: 2020년 4월 7일
3. 점·사용허가를 받은 자: 강 * 윤
4. 변경고시내용

구분	변경 전			변경 후		
	장 소	지적 (㎡)	사용허가 면적(㎡)	장 소	지적 (㎡)	사용허가 면적(㎡)
장소 및 사용면적	소라면 사곡리 1291번지	42,005	2,308	변경없음		
목 적	벼 경작용 부지 사용			변경없음		
기 간	2016. 1. 1. ~ 2020. 12. 31.			2021. 1. 1. ~ 2025. 12. 31.		
허가조건	당초 허가조건(제2016-3호)			변경없음		

2021년 4월 7일

여 수 시 장

공유수면(구거) 점·사용 허가(변경)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: 제2021-17호
2. 허가일자: 2020년 4월 7일
3. 점·사용허가를 받은 자: 김 * 희
4. 변경고시내용

구분	변경 전			변경 후		
	장 소	지적 (㎡)	사용허가 면적(㎡)	장 소	지적 (㎡)	사용허가 면적(㎡)
장소 및 사용면적	소라면 사곡리 1291번지	42,005	952	변경없음		
목 적	벼 경작용 부지 사용			변경없음		
기 간	2016. 1. 1. ~ 2020. 12. 31.			2021. 1. 1. ~ 2025. 12. 31.		
허가조건	당초 허가조건(제2016-2호)			변경없음		

2021년 4월 7일

여 수 시 장

2021년 여수시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고시

여수시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특례인정 승인 요청에 대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.

2021. 4. 7.

여 수 시 장

1. 목 적

: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에 한해, 수급상황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를 인정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2. 특례인정 지역

: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에 속하면서, 동일 행정구역 내에 해당 어린이집 외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

→ 남면·묘도동·삼산면·화양면·화정면

[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의 범위]	
1.	「도서·벽지교육 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·벽지 지역
2.	행정구역상 읍·면지역
3.	동 지역(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)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지정된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3. 특례인정 범위

구 분		0세	1세	2세	3세	4세 이상
원 칙		3명	5명	7명	15명	20명
특례인정범위	기본보육	4명 이내	7명 이내	9명 이내	19명 이내	24명 이내
	연장보육	7명 이내 (0세 포함시 5명 이내)			20명 이내	

4. 특례인정 조건

가. 교사 대 아동비율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특례 인정

나.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30%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에 사용하여야 함,

※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비에 한하여 사용

5. 특례인정 기한 : 2022. 2. 28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(061-659-37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